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부 정책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의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등의 기능을 자연환경정책실로 이관하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을 기존 차관 직속 하부조직에서 장관 직속 하부조직으로 변경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업무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변인 및 환경보건정책관 내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사무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유역환경청의 관리운영직군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8급 1명)으로 전환하며, 물관리일원화 이후 조직융합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연구직 일부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홍보기획팀장 및 미디어협력팀장”을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기획팀장”을 “정책홍보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및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을 “홍보계획”으로, “협업 지원”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활용”을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5. 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터뷰 등 장·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8. 언론 등 정책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디어협력팀장”을 “디지털소통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을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4.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3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지속가능전략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갈등조정팀장 및 환경교육팀장”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및 갈

등조정팀장”으로, “갈등조정팀장 및 환경교육팀장은”을 “갈등조정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5. 환경 관련 갈등관리전문가 네트워크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 관련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연환경정책실장·자연보전정책관·자원순환정책관 및 환경경제정책관”을 “자연환경정책실장”으로, “자연환경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자연보전정책관·자원순환정책관 및 환경경제정책관은 나등급”을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자연생태정책과·생물다양성과·자연공원과·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과·자원순환정책과·폐자원관리과·자원재활용과·폐자원에너지과·환경산업경제과·환경연구개발과 및 통합허가제도과를”을 “자연생태정책과·생물다양성과·자연공원과·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과·자원순환정책과·폐자원관리과·자원재활용과·폐자원에너지과·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가제도과 및 환경교육팀을”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교육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연보전정책관·자원순환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연보전정책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자원순환정책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1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녹색전환정책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30의2, 제30의3, 제30의4 및 제31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6.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총괄
9.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12. 한국환경공단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3.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
14.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조정
15. 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및 녹색 일자리,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자연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6조제17항(종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산업경제과장”을 “녹색산업혁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을 “환경산업진흥단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

8항(중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연구개발과장”을 “녹색기술개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투자활성화, 녹색금융 등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㉑ 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정책의 총괄·조정 및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9.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자료의 발간·보급
13.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제7조제1항 중 “생활환경정책실장·대기환경정책관·기후변화정책관

및 환경보건정책관”을 “생활환경정책실장”으로, “생활환경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대기환경정책관·기후변화정책관 및 환경보건정책관은 나등급”을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대기환경정책관·기후변화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대기환경정책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후변화정책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환경보건정책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9항(중전의 제5항)제19호 중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을 “대기관리권역의 지정·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1항)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2항)에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운영

15.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1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9.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0.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제17항(중전의 제13항)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를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로, “관리지역 지정”을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운영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제7조의2제3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제5항제5호 중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대기환경연구지원단”으로 한다.

제24조 단서 중 “제27조제4항제16호”를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20호”로, “한다”를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에서 제20호까지의 사항은 경상남도 하동군을 포함하여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에서 제20호까지의 사항은 관할구역에서 경상남도 하동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평가·보고, 시·도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18.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1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0. 지역별·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

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모두 포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제31조의3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18. 지역별·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34조제4항제5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37조제5항 단서부터 제8항 단서까지 중 “5퍼센트”를 각각 “7퍼센트”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8 제2호, 별표 10의2 제2호,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13 제2호 및 별표 14 제2호와 같다”를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배정 시 소수

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별표 6 중 “시설주사 3”을 삭제하며, 공업주사 1 다음에 “기상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3 다음에 “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를 신설하고, 운전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7 중 “시설주사 3”을 삭제하며, 공업주사 1 다음에 “기상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4 다음에 “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를 신설하고, 운전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8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88”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88”을 “394”로 하며,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3”을 “47”로 하고,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7(중전의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3) 다음에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6”을 신설하며, 공업연구사 · 농업연

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94”를 “60”으로 하고,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60(종전의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94) 다음에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40”을 신설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6.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6.0”을 삭제하며,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6.0”을 삭제한다.

별표 10의2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2”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을 “22”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 또는 환경주사 2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를 신설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2.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0”을 삭제한다.

별표 11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619”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619”를 “621”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6”을 “57”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5”를 “27”로 하고,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를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3 다음에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4”를 신설하고,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8”을 삭제하며, 환경연구사 27 다음에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8”을 신설하고, “열관리운영서기 1”을 삭제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0”을 삭제한다.

별표 12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619”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619”를 “621”로 하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1”을 “52”로,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0”을 “22”로 하고,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를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3 다음에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4”를 신설하고,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8”을 삭제하며, 환경연구사 27 다음에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8”을 신설하고, “열관리운영서기 1”을 삭제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0”을 삭제한다.

별표 13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06”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06”을 “307”로 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7”을 “8”로 하고,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을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2 다음에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을 신설하고,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8”을 삭제하며, 기록연구사 3 다음에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을 신설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행

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14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09”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08”을 “309”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4”를 “5”로 하고,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을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2 다음에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을 신설하고,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8”을 삭제하며, 기록연구사 3 다음에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을 신설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16의2 중 “시설연구사 23”을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4 다음에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3”을 신설한다.

별표 16의3 중 “시설연구사 23”을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4 다음에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3”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 (생 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u>홍보기획팀장</u> <u>및 미디어협력팀장</u> 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 다.	② ----- <u>정책홍보팀장</u> <u>및 디지털소통팀장</u> ----- ----- ----- ----- ----- --.
③ <u>홍보기획팀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③ <u>정책홍보팀장</u>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및 <u>디지털소통 홍보계획</u> 의 수립 · 조정 및 <u>협의 지원</u>	1. ----- <u>홍</u> <u>보계획</u> ----- ----- <u>시행</u>
2.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 <u>보에 관한 사항</u>	2. <u>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u> <u>보 및 상황 관리</u>
3. 온라인대변인 지정 · 운영 등 <u>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u> <u>사항</u>	3. <u>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u> <u>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u>
4.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u>홍보활동에 관한 사항</u>	4. <u>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u>
5. 실시간 이슈 대응 체계 구축 <u>에 관한 사항</u>	5. <u>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u> <u>운영에 관한 사항</u>
6. <u>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 ·</u> <u>활용에 관한 사항</u>	6. <u>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u> <u>보교육</u> -----

<신 설>

<신 설>

④ 미디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2.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5.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6. 인터뷰 등 장·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

7. 인터뷰 등 장·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8. 언론 등 정책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
-----.

1. 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4.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활용-----

6. 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 가

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정책기획관
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신 설>

<신 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
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지속
가능전략담당관·규제개혁법무
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안
전담당관·갈등조정팀장 및 환
경교육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
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갈등
조정팀장 및 환경교육팀장은 서
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

등급-----

--.

②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
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6조의2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기획재정담
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
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및 갈등조정팀
장 -----

----- 갈등
조정팀장은 -----

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6.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총괄

-----.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삭제>

9.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

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

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 등에 관

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⑥ ~ ⑧ (생략)

⑨ 갈등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
다.

1. ~ 4. (생략)

5.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6.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
의에 관한 사항(토양·지하수
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
자료의 발간·보급

8.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
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⑩ -----

--.

1. ~ 4. (현행과 같음)

5. 환경 관련 갈등관리전문가
네트워크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 관련 갈등관리
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삭 제>

<삭 제>

⑩ 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
다.

1. 환경교육정책의 총괄·조정
및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2.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
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
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
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제4조 (생 략)

제6조(자연환경정책실) ① 자연환
경정책실장·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및 환경경제정
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삭 제>

제2조의2 (현행 제4조와 같음)

제6조(자연환경정책실) ① 자연환
경정책실장-----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자연
환경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
등급으로, 자연보전정책관·자
원순환정책관 및 환경경제정책
관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자연환경정책실에 자연생태

----- 직무
등급은 가등급-----

②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자
연환경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
기관은 자연보전정책관·자원
순환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으
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연보전정책관은 직제 제9
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④ 자원순환정책관은 직제 제9
조제3항제16호부터 제30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⑤ 녹색전환정책관은 직제 제9
조제3항제30의2, 제30의3, 제30
의4 및 제31호부터 제41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⑥ ----- 자연생태정

정책과 · 생물다양성과 · 자연공원과 · 국토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과 · 자원순환정책과 · 폐자원관리과 · 자원재활용과 · 폐자원에너지과 · 환경산업경제과 · 환경연구개발과 및 통합허가제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⑪ (생략)

<신설>

책과 · 생물다양성과 · 자연공원과 · 국토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과 · 자원순환정책과 · 폐자원관리과 · 자원재활용과 · 폐자원에너지과 · 녹색전환정책과 · 녹색산업혁신과 · 녹색기술개발과 · 통합허가제도과 및 환경교육팀을 -----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교육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⑦ ~ ⑮ (현행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⑯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 · 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 · 조정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 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 · 정

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
원

6.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
의 총괄

9.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
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
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 등에 관
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12. 한국환경공단의 관리·감독
에 관한 사항

13.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

14.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
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조
정

15. 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녹색 일자리, 사회
적 경제에 관한 사항

⑫ <u>환경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7. (생략) 8. <u>환경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u> 9. · 10. (생략) 11. <u>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u> 12. <u>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u> 13. <u>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조정</u> 14. · 15. (생략) 16. <u>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u> 17. ~ 20. (생략) 21. <u>한국환경공단의 관리·감독</u>	16. <u>그 밖에 자연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u> ⑬ <u>녹색산업혁신과장-----</u> -----. 1. ~ 7. (현행과 같음) 8. <u>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투자활성화, 녹색금융 등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9. · 10. (현행과 같음) 11. <u>환경산업진흥단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u> <u><삭 제></u> <u><삭 제></u> 12. · 13.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u><삭 제></u> 14. ~ 17. (현행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u><삭 제></u>
---	--

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자연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업무로서 환경산업·
환경기술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 환경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⑭ (생략)

<신설>

<삭제>

⑱ 녹색기술개발과장-----
-----.

1. ~ 18. (현행과 같음)

⑲ (현행 제14항과 같음)

⑳ 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정책의 총괄·조정
및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2.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
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
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

제7조(생활환경정책실) ① 생활환경정책실장·대기환경정책관·기후변화정책관 및 환경보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생활환경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대기환경정책관·기후변화정책관 및 환경보건정책관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 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9.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 자료의 발간·보급
13.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제7조(생활환경정책실) ① 생활환경정책실장-----

----- 직무

등급은 가등급-----

-----.

②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 략)

19.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
에 관한 사항

⑥ ~ ⑩ (생 략)

활환경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
기관은 대기환경정책관·기후
변화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으
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대기환경정책관은 직제 제10
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
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
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후변화정책관은 직제 제10
조제3항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⑤ 환경보건정책관은 직제 제10
조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⑥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⑨ -----
-----.

1. ~ 18. (현행과 같음)

19. 대기관리권역의 지정·관리

⑩ ~ ⑭ (현행 제6항부터 제10

⑪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2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운영

2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3.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24.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5. (생략)

⑫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신설>

항까지와 같음)

⑮ -----
-----.

1. ~ 19.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 (현행 제25호와 같음)

⑯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운영

15.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⑬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16.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 · 운영

17.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 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 지도 작성 · 관리에 관한 사항

16.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 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 지도 작성 · 관리에 관한 사항

17.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 ·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9.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0.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⑰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 운영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 · 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빛공해 관련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19. <u>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u> <u>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u> <u>· 운영에 관한 사항</u> 20. <u>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u> <u>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u> <u>지정에 관한 사항</u> 21. <u>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중</u> <u>합대책 수립 및 추진</u> 22. <u>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u> <u>력에 관한 사항</u> ⑭ ~ ⑯ (생략) 제7조의2(물통합정책국) ①·② (생략) ③ 물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u>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u> <u>항</u> 15. ~ 21. (생략) ④ 물이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략) <u><신설></u>	19. <u>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u> <u>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u> 20. <u>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u> -- ----- <u>라돈 관련</u> <u>컨설팅 사업추진</u>----- ----- <u><삭제></u> <u><삭제></u> ⑱ ~ ㉔ (현행 제14항부터 제1 6항까지와 같음) 제7조의2(물통합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3. (현행과 같음) <u><삭제></u> 15. ~ 21. (현행과 같음) ④ ----- -----. 1. ~ 25. (현행과 같음) 26. <u>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u> <u>항</u>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① ~ ④ (생 략)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⑤ ----- -----.
1. · 2.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u>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u>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u>대기환경연구지원단</u> ----- -----
6. 삭 제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관할구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유역환경 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 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 우 <u>제27조제4항제16호</u> 의 사항 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 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 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u>한다</u> .	제24조(관할구역) ----- ----- ----- ----- ---. ----- -- <u>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20 호</u> ----- ----- ----- ----- ----- 하고, <u>낙동강유역 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 6호에서 제20호까지의 사항은 경상남도 하동군을 포함하여 관</u>

제27조(환경관리국) ① ~ ③ (생략)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대기
질 개선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13. ~ 1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
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
호에서 제20호까지의 사항은 관
할구역에서 경상남도 하동군을
제외한다.

제27조(환경관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3. ~ 16. (현행과 같음)

17.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
리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보고, 시·도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
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하
다)

18.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
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
영(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하
다)

1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신 설>

17. (생 략)

⑤ ~ ⑧ (생 략)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생 략)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1. ~ 11. (생 략)

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0. 지역별·배출원별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모두 포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21. (현행 제17호와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대기
질 개선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13. ~ 16. (생략)

<신설>

<신설>

17. (생략)

③ ~ ⑤ (생략)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 ~
③ (생략)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사업장 배출량 산정지침 및
고시의 제·개정

6. ~ 13. (생략)

14.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제>

13. ~ 16. (현행과 같음)

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18. 지역별·배출원별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
도·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9. (현행 제17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13. (현행과 같음)

<삭제>

량 관리 시스템의 운영

15. ~ 20. (생략)

⑤ · ⑥ (생략)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② · ③ (생략)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생략)

⑤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15. ~ 20.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7퍼 센트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7퍼센트 _____

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으며, 별표 12의 정원 중 홍보·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⑥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으며, 별표 14의 정원 중 홍보·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⑦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

[illegible]

⑥

7퍼 센트

⑦ -----

7퍼센트-----

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홍보·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⑧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의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3과 같다.

⑨ ~ ⑪ (생략)

제3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3제1항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8 제2호, 별표 10의2 제2

-----.

⑧ -----

----- 7퍼센트 -----

-----.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

-----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호,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13 제2호 및 별표 14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	1	·	
<u>시설주사</u>	<u>3</u>	<u><삭 제></u>	-3
<u>기상주사 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3</u>	+3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 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3	·	
<u>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u> <u>· 환경주사보 · 시설주</u> <u>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u> <u>방재안전주사보</u>	<u>5</u>	<u><삭 제></u>	-5

<u>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u> <u>· 보건주사보 · 환경주</u> <u>사보 · 시설주사보 · 임</u> <u>업주사보 또는 방재안</u> <u>전주사보</u>	<u><신 설></u>	<u>5</u>	+5
·	·	·	
·	·	·	
운전서기	1		
<u>행정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3</u>	<u>12</u>	-1
·	·	·	
·	·	·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	1	·	
<u>시설주사</u>	<u>3</u>	<u><삭 제></u>	-3
<u>기상주사 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3</u>	+3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 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4	·	
<u>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u> <u>· 환경주사보 · 시설주</u> <u>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u> <u>방재안전주사보</u>	<u>5</u>	<u><삭 제></u>	-5
<u>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u> <u>· 보건주사보 · 환경주</u> <u>사보 · 시설주사보 · 임</u> <u>업주사보 또는 방재안</u> <u>전주사보</u>	<u><신 설></u>	<u>5</u>	+5

•	•	•	
•	•	•	
운전서기	1		
<u>행정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0</u>	<u>9</u>	-1
•	•	•	
•	•	•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u>			
<u>원은 제외한다)</u>	<u>388</u>	<u><삭 제></u>	-388
일반직 계	<u>388</u>	<u>394</u>	+6
·	·	·	
·	·	·	
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 보건연구원 또는 환경			
연구원	<u>73</u>	<u>47</u>	-26
<u>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u>			
<u>· 보건연구원 · 환경연</u>			
<u>구관 또는 시설연구원</u>	<u><신 설></u>	<u>26</u>	+26
·	·	·	
·	·	·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			
연구사	<u>94</u>	<u>60</u>	-34
<u>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u>			
<u>· 보건연구사 · 환경연</u>			
<u>구사 또는 시설연구사</u>	<u><신 설></u>	<u>40</u>	+40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6.0</u>	<u><삭 제></u>	-6.0
<u>일반직 계</u>	<u>6.0</u>	<u><삭 제></u>	-6.0
<u>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u>			
<u>·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u>			
<u>연구사</u>	<u>6.0</u>	<u><삭 제></u>	-6.0

[별표 10의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u>			
<u>원은 제외한다)</u>	<u>22</u>	<u><삭 제></u>	-22
일반직 계	<u>20</u>	<u>22</u>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전			
산주사·통계주사 또는			
환경주사	2		
<u>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u>			
<u>· 전산서기보·통계서</u>			
<u>기보 또는 환경서기보</u>	<u><신 설></u>	<u>2</u>	+2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2.0</u>	<u><삭 제></u>	-2.0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0
<u>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u>			
<u>· 전산서기보·통계서</u>			
<u>기보 또는 환경서기보</u>	<u>2.0</u>	<u><삭 제></u>	-2.0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u> <u>원은 제외한다)</u>	<u>619</u>	<u><삭 제></u>	-619
일반직 계	<u>619</u>	<u>621</u>	+2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 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56</u>	<u>57</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 설서기보	<u>25</u>	<u>27</u>	+2
·	·	·	
·	·	·	
방호서기보	3	·	
<u>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u> <u>또는 환경연구관</u>	<u>4</u>	<u><삭 제></u>	-4

<u>공업연구원 · 보건연구원</u> <u>· 환경연구원 또는 시</u> <u>설연구원</u>	<u><신 설></u>	<u>4</u>	+4
·	·	·	
·	·	·	
환경연구사	27	·	
<u>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u> <u>또는 환경연구사</u>	<u>28</u>	<u><삭 제></u>	-28
<u>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u> <u>· 환경연구사 또는 시</u> <u>설연구사</u>	<u><신 설></u>	<u>28</u>	+28
·	·	·	
<u>열관리운영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2.0</u>	<u><삭 제></u>	-2.0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0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u> <u>·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u> <u>서기보</u>	<u>2.0</u>	<u><삭 제></u>	-2.0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u> <u>원은 제외한다)</u>	<u>619</u>	<u><삭 제></u>	-619
일반직 계	<u>619</u>	<u>621</u>	+2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 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51</u>	<u>52</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 설서기보	<u>20</u>	<u>22</u>	+2
·	·	·	
·	·	·	
방호서기보	3	·	
<u>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u> <u>또는 환경연구관</u>	<u>4</u>	<u><삭 제></u>	-4

<u>공업연구원 · 보건연구원</u> <u>· 환경연구원 또는 시</u> <u>설연구원</u>	<u><신 설></u>	<u>4</u>	+4
·	·	·	
·	·	·	
환경연구사	27	·	
<u>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u> <u>또는 환경연구사</u>	<u>28</u>	<u><삭 제></u>	-28
<u>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u> <u>· 환경연구사 또는 시</u> <u>설연구사</u>	<u><신 설></u>	<u>28</u>	+28
·	·	·	
<u>열관리운영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2.0</u>	<u><삭 제></u>	-2.0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0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u> <u>·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u> <u>서기보</u>	<u>2.0</u>	<u><삭 제></u>	-2.0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u> <u>원은 제외한다)</u>	<u>306</u>	<u><삭 제></u>	-306
일반직 계	<u>306</u>	<u>307</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 설서기보	<u>7</u>	<u>8</u>	+1
.	.	.	
.	.	.	
방호서기보	2	.	
<u>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u> <u>또는 환경연구관</u>	<u>3</u>	<u><삭 제></u>	-3
<u>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u> <u>· 환경연구관 또는 시</u> <u>설연구관</u>	<u><신 설></u>	<u>3</u>	+3
.	.	.	
.	.	.	
기록연구사	3	.	

<u>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u> <u>또는 환경연구사</u>	<u>18</u>	<u><삭 제></u>	-18
<u>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u> <u>· 환경연구사 또는 시</u> <u>설연구사</u>	<u><신 설></u>	<u>18</u>	+18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1.0</u>	<u><삭 제></u>	-1.0
<u>일반직 계</u>	<u>1.0</u>	<u><삭 제></u>	-1.0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u> <u>·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u> <u>서기보</u>	<u>1.0</u>	<u><삭 제></u>	-1.0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u> <u>원은 제외한다)</u>	<u>309</u>	<u><삭 제></u>	-309
일반직 계	<u>308</u>	<u>309</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 설서기보	<u>4</u>	<u>5</u>	+1
·	·	·	
·	·	·	
방호서기보	2	·	
<u>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u> <u>또는 환경연구관</u>	<u>3</u>	<u><삭 제></u>	-3
<u>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u> <u>· 환경연구관 또는 시</u> <u>설연구관</u>	<u><신 설></u>	<u>3</u>	+3
·	·	·	
·	·	·	
기록연구사	3	·	

<u>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u> <u>또는 환경연구사</u>	<u>18</u>	<u><삭 제></u>	-18
<u>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u> <u>· 환경연구사 또는 시</u> <u>설연구사</u>	<u><신 설></u>	<u>18</u>	+18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1.0</u>	<u><삭 제></u>	-1.0
<u>일반직 계</u>	<u>1.0</u>	<u><삭 제></u>	-1.0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u> <u>·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u> <u>서기보</u>	<u>1.0</u>	<u><삭 제></u>	-1.0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방호서기보	4	•	
<u>시설연구사</u>	<u>23</u>	<u><삭 제></u>	-23
<u>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u>			
<u>또는 시설연구사</u>	<u><신 설></u>	<u>23</u>	+23
•	•	•	
•	•	•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방호서기보	4	•	
<u>시설연구사</u>	<u>23</u>	<u><삭 제></u>	-23
<u>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u>			
<u>또는 시설연구사</u>	<u><신 설></u>	<u>23</u>	+23
•	•	•	
•	•	•	